

2014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

I. 2014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

1 지방재정 여건

1. 세입전망

- (자체수입) 금년대비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은 지속
- (의존수입)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,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예상

우리도 세수확보 여건

- ◆ 부동산 경기는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,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증가 여부 불투명
 - ◆ 지방교부세는 대·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
- ⇒ 2014년도 세입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미미한 증가 전망

2. 세출전망

- 복지정책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
- 자치단체별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지속 증가 전망

우리도 투자재원 여건

- ◆ 「생명과 태양의 땅」, 「함께하는 충북」 완성을 위한 민선5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와
 - ◆ 영유아 보육,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⇒ 세입 대비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재정여력 약화 예상

2 2014년도 재정 운용 방향

재정 운용 목표

건전한 재정운용, 행복한 도민생활

재정 운용 기본방향

- 🏗️ 건전재정운용 기초 유지
- 🏗️ 일자리 창출, 안전관리 기능강화 등 도민생활 안정
- 🏗️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

건전재정 운용

- ◆ 건전재정운용 기초 유지
- ◆ 지방채무 건전성 확보
- ◆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

행복한 도민생활

- ◆ 일자리 창출 지속추진
- ◆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
- ◆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

성장기반 강화

- ◆ 신성장 동력 확보
- ◆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
- ◆ 자체세입 확충 노력

II. 2014년도 예산편성 계획

1 재정운영의 중점

- ◆ 「생명과 태양의 땅」, 「함께하는 충북」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,
- ◆ 충청북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 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「신수도권 시대의 중심, 충북」 실현 적극 지원

□ 「생명과 태양의 땅」, 「함께하는 충북」의 완성에 주력

- 국가재정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사업과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 등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
-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, 신규사업은 공약사업과 연계한 대응사업 등 성공적인 민선5기 마무리 사업에 투자
- 균형발전사업,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간·계층간·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, 모든 도민이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

□ 「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」 사업 지속 투자

- 섬김과 나눔의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민 복지정책 사업에 재정지원 강화
- 저소득·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과 치매와 중풍 걱정 없는 충북 건설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
- 물가 안정,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, 골목상권 보호 등 도민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지속 투자
- 맞춤형 일자리 창출, 투자유치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

□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 확보

- 저탄소 녹색성장, 창조적 R&D 투자, 신산업 육성 등 **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**에 투자
- 화장품·뷰티산업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**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**
-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, 3+1프로젝트 전략사업에 지속 투자로 「**신수도권 시대 중심, 충북**」 실현 적극 지원

□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

-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(2014년), 세계 유기농엑스포(2015년) 등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 적극 지원으로 '세계속의 충북' 도약 기반 마련

□ 책임과 성과 중심의 「효율적 재정 운영」 강화

- 모든 사업은 원점(zero-base)에서 분석·점검,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**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실시**
- 민간이전 경비는 한도액 범위내 편성과 **일몰제를 엄격히 적용**
- 행사·축제성 경비는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, **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**
-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**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**하고, 불요 불급한 경비 등 **경상경비는 획기적 절감** 추진
- 지방채는 **고금리채 차환**과 여유자금 발생시 지방채 **조기상환**으로 지방채무구조 적극 개선

2 예산편성 세부계획

- ◆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도정 주요 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으로 예산 편성
- ◆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훈령으로 제시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준수

1. 세입예산 편성

① 지방세

- 2014년도 지방세 징수 가능액 전액 계상
- 과다·과소 계상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경제상황 및 예년의 징수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

② 세외수입

-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계액 정확히 계상
- 징수가능한 수입액은 전액 계상

③ 지방교부세

- 2014년 산정결과 및 안전행정부 통지액 반영
- 예산편성 기간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 경우 내국세 증감을 및 우리도 점유율 등을 감안 추계하여 계상

④ 국고보조금(광특, 기금 포함)

- 소관 중앙부처 예산안 계상(예산안 통지 : 10.15까지)
- 소관 부처의 통지가 없을 경우 추계하여 반영
 - 법정·의무적 경비(사회복지비 등), 국가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

⑤ 지방채(2014년도 한도액 : 460억원)

- 재정건전 운영을 위해 최소경비 범위내에서 적정액 계상

2. 세출예산 편성

경상경비 최소화 ⇨ 투자자원 최대 확보

- ◆ 각종 행사·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는 zero-base에서 검토
- ◆ 관행적·낭비적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
- ◆ 불요·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

① 공통사항

-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전액 계상
- 업무추진비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훈령으로 정한 기준액 준수
- 사전절차를 이행하고,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만 반영
- 신규(보조)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을 대체 또는 축소하는 범위내에서 반영하되, 유사중복 지원여부, 자부담 능력여부, 사업 성격상 보조사업으로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방침 결정(지사님 결재)후에 예산 요구
- 분권교부세 사업중 시군시행사업은 당초예산 지원이후, 추가수요 미지원 계획
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중 기준의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비율을 준수(자원판단후 예산담당관 조정)

② 행정운영경비

- **인력운영비** :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 소요를 판단 요구(별도자료 통보)
- **기본경비** : 부서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경비('13년 수준 유지)

※사업성격의 일반수용비, 특정수요 여비 등은 사업에 포함 편성

<기본경비의 범위>

- 201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) ○ 202 여비(국내여비)
- 203 업무추진비(기관운영, 정원가산, 부서운영) ○ 204 직무수행경비(직책급업무추진비)
- 405 자산취득비(경상적인 업무수행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)

③ 사업예산

-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·융자사업으로 심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 불가 원칙 견지
-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 등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지양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선정
- 지역개발 및 도로건설 등은 투자속도를 조절하고 민선5기 공약 사업 마무리와 도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
- 일회성·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인정하고, 과 연찬회 경비는 예산편성 제외
- 민간이전경비는 부서별 한도액 설정 배분후 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정(부서별 한도액 별도 통보)

④ 기타사항

-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는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 유지

<도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경비>

- 위원회 참석수당 ○ 시험수당 ○ 특근매식비

- **여유자원 발생시 지방채 조기상환**에 우선 사용하여 지방채무 구조 적극 개선

3 2013년과 달라지는 주요내용

1. 일·숙직비 한도 설정

- '04년부터 지방 자율로 정하도록 한 이후 자치단체간 지급 기준액이 최대 3배 차이가 발생
 - * 최저단체 : 3만원, 최고단체 9만원 / 국가 : 3만원
- 1일(야)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

2. 월액여비 한도 설정

-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,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화
- 국가의 최고 상한액인 월 138,000원을 한도로 하되, 50%까지 가산 허용
 - 50% 가산은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책정토록 함

3. 직원능력개발비 폐지

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일부항목과 중복(자기개발항목)되므로 직원 능력개발비의 예산편성 근거를 삭제

4.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

- 의장·부의장·일반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,000천원 통일
 - ※ 다만,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차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(의장·부의장 2,500천원, 의원 1,800천원)

5. 의정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성 금지 명문화

- 전·현직의원 단체인 '의정회'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'행정동우회'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하도록 명문화
 - 다만,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

Ⅲ. 추진일정

□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시달회의

- 일 시 : 2013. 8. 27(화) 14:00
- 장 소 : 여성발전센터 대회의실
- 참 석 : 실·과·소 주무팀장, 예산담당자
- 내 용 :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설명

□ 세입·세출예산 요구

- 실·과·소 사업구조화 정리 : 8. 30 까지
- 세입·세출예산요구서, 중앙지원사업조서, 사업설명서 : 9. 4 까지
- 부서별 인력운영비(총액인건비) : 엑셀서식 별도 통보
- 재정관리시스템 입력 및 기타서식 : 9. 4 까지

□ 세입·세출예산안 확정

- 예산 보고서 작성 및 예산안 확정 : 10. 30한
- 예산안 편제 및 의회 제출 : 11. 10한